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영덕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25563
----------	-------

발의연월일 : 2023. 11. 22.

발 의 자 : 윤영덕 · 이해식 · 이학영
이동주 · 김홍걸 · 박주민
김정호 · 이용빈 · 안민석
박홍근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소비자중심 경영인증제도를 두어 물품의 제조·수입·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의 모든 과정이 소비자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경영을 하는 사업자에 대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인증을 하고 인증을 받은 사업자는 포상 또는 지원 등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소비자중심 경영인증제도가 2007년에 도입·시행된 이후 법적 근거 마련, 우수 기업 포상, 공정거래협약 이행 평가 시 가점 부여 등을 통하여 제도의 정착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아직 제도가 활성화되지 않았고 그 이유로 짧은 인증기한, 정부 차원의 홍보 부족 등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소비자중심 경영인증제도의 인증기한을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하고, 소비자중심 경영인증제도를 운영하는 공정거래위원회가 해당 제도와 인증을 받은 사업자에 대한 홍보를 적극적으로 시행하도록 함으

로써 소비자중심경영 인증제도를 활성화하고 나아가 소비자들의 소비 생활 향상에 이바지하려는 것임(안 제20조의2부터 제20조의4까지).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비자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의2제4항 중 “2년”을 “3년”으로 하고, 같은 조 제7항을 제8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8항(중전의 제7항) 중 “제6항”을 “제7항”으로 한다.

- ⑦ 공정거래위원회는 소비자중심경영인증에 관한 국민의 관심을 높이기 위하여 소비자중심경영인증과 그 인증을 받은 사업자에 대한 홍보를 적극적으로 시행하여야 한다.

제20조의3제3항제3호 중 “제20조의2제7항”을 “제20조의2제8항”으로 한다.

제20조의4제1항제2호 중 “제20조의2제7항”을 “제20조의2제8항”으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20조의2(소비자중심경영의 인 증) ① ~ ③ (생 략)</p> <p>④ 소비자중심경영인증의 유효 기간은 그 인증을 받은 날부터 <u>2년</u>으로 한다.</p> <p>⑤ ~ ⑥ (생 략)</p> <p><u><신 설></u></p> <p>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 정 외에 소비자중심경영인증의 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 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제20조의3(소비자중심경영인증기 관의 지정 등) ①·② (생 략)</p> <p>③ 공정거래위원회는 인증기관 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증기관의 지정을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p>	<p>제20조의2(소비자중심경영의 인 증) ① ~ ③ (현행과 같음)</p> <p>④ ----- ----- <u>3년</u>-----.</p> <p>⑤ ~ ⑥ (현행과 같음)</p> <p><u>⑦ 공정거래위원회는 소비자중 심경영인증에 관한 국민의 관 심을 높이기 위하여 소비자중 심경영인증과 그 인증을 받은 사업자에 대한 홍보를 적극적 으로 시행하여야 한다.</u></p> <p>⑧ -----<u>제7항</u>----- ----- ----- -----.</p> <p>제20조의3(소비자중심경영인증기 관의 지정 등) ①·② (현행과 같음)</p> <p>③ ----- ----- ----- -----</p>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면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2. (생략)

3.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제20조의2제7항에 따른 소비자중심경영인증의 기준 및 절차를 위반한 경우

4. ~ 6. (생략)

제20조의4(소비자중심경영인증의 취소)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소비자중심경영인증을 받은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면 그 인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생략)

2. 제20조의2제7항에 따른 소비자중심경영인증의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3. (생략)

② (생략)

1. 2. (현행과 같음)

3. -----제20조의2제8항-----

4. ~ 6. (현행과 같음)

제20조의4(소비자중심경영인증의 취소) ① -----

1. (현행과 같음)

2. 제20조의2제8항-----

3.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